

DRB 윤리강령 실천지침

제 1 장. 총 칙

1. 목 적

본 '윤리강령 실천지침'(이하 '실천지침')은 DRB의 모든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

- 2.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강령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- 2.2 임직원은 의사결정 시 윤리강령, 실천지침 그리고 관련 법률 중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
3. 적용대상

본 실천지침은 DRB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2 장. DRB 임직원의 자세

1. 성실한 업무수행 (성실이행 의무)

- 1.1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2. 이해상충의 해결

- 2.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- 2.2 임직원은 이해상충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(이하 "규정")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3 장.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

1. 법규 준수

- 1.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 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방침과 규정, 국내외 법률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1.2 임직원은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준법경영 담당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의사결정 후 수행하여야 하고,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

- 2.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과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장. 실천지침의 운영

1. 임직원의 책임

- 1.1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,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.
- 1.2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에 있어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감사 담당팀에 질의, 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- 1.3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.
또한,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.

2.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

- 2.1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감사 담당팀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- 2.2 임직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를 한 제보자에게 보복 등의 일체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1. 시행일

본 실천지침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위반에 대한 조치

본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개정이력

2016. 05. 01 제정

2024. 12. 19 일부 개정(대내외 환경변화 및 요구사항 반영)

2025. 12. 18 개정이력 신설